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0,187,845	15,005,635
일반회계	476,902,263	14,307,068
특별회계	23,285,582	698,567
기타특별회계	23,285,582	698,5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92,300	110,769
의료급여특별회계	1,169,556	35,087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813,612	54,408
주택사업특별회계	24,230	72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5,106	2,853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270,418	98,113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380,654	11,42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7,551,133	226,534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60,091	73,803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825,182	84,7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00	9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